

【자료소개】

1950년대 朝鮮紡織株式會社 쟁의관련 문서 해제

김 승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조선방직주식회사(이하-조방)는 1917년 11월 일본자본 미쓰이(三井)계열에서 설립한 대규모 면방직기업으로 해방 이후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춘 국내 방직기업 6개 가운데 하나로서 운영되기 이른다.¹⁾ 해방직후 귀속기업체로 해당 사업체 하급간부가 운영하는 유형으로²⁾ 경영된 조방은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이 장기집권을 획책하면서 부산정치파동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1952년 3월 ‘조방낙면사건(朝紡落綿事件)’을³⁾ 시작으로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후 전개된 1951년 12월부터 1952년 3월까지의 조방쟁의는 단순히 대규모 공장에서 발생한 자연발생적 쟁의가 아니었다. 해방 이후 귀속기업체를 둘러싸고 노사협조의 “균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물적기반으로 활용될 것인가, 아니면

-
- 1) 일제강점기 조방에 대한 경제사적 연구로 정안기(a), 2001, 「戰間期 朝鮮紡織의事業經營과 金融構造-‘資金運用表’ 작성에 의한 收支構造分析을 중심으로-」『經濟史學』30; 정안기(b), 2002, 「朝鮮紡織의 戰時經營과 資本蓄積의 전개」『經濟史學』32 및 노동운동의 측면에서 연구는 박재화, 1993, 「1930년 조선방직 노동자들의 파업연구」, 부산여대 석사학위논문; 이송희, 2003, 「일제하부산지역 방직공장·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의 쟁의」『梨花史學研究』第30輯
 - 2) 해방 직후 부산·경남지역 귀속기업체의 운영에 대해서는 차철우, 1996,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 사업체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성격」『지역과 역사』 제1호, 126~129쪽.
 - 3) 조방낙면(朝紡落綿)사건의 당사자였던 김지태는 부산정치파동의 와중에서 중요 정치세력이었던 민우회(民友會)를 결성한 중심 인물이었다. 민우회, 조방낙면사건, 부산정치파동 등에 대해서는 金智泰 著, 1976, 『나의 履歷書』136~141쪽, 145~154쪽 및 부산일보사, 1985, 『臨時首都千日』, 189~305쪽 참조

종업원과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권을 철저하게 배제한 미국식 자본주의의 발전코스를 걷을 것인가 하는 양자의 분기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⁴⁾ 더구나 이 사건은 단순히 경영권을 둘러싼 노사의 대립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장기집권을 획책한 이승만의 정치적 간섭과 대한노총 사이 노동운동의 혜개모니를 두고 전개된 노동조합 내의 알력과 갈등 등이 중첩적으로 얹혀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경제계와 사회계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사건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조방쟁의 관련문건은 기존의 공식기록에서 접할 수 없는 조방쟁의 지도부들의 당시 생생한 상황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특히 기존의 조방쟁의 관련 연구들이 1951년 10월부터 1952년 3월까지의 쟁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에 반해 이번에 소개하는 자료들 중에는 상당 부분이 1958년 10월 발생한 조방쟁의와 그 연장선에서 나타난 4·19 이후 해임된 노동자들의 원상복귀와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제기한 노동자들의 움직임까지 포함할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더욱더 크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조방쟁의관련 자료는 A4 용지 220장 정도의 분량이다. 건수로는 전체 20건이다. 20건의 자료를 작성연대가 아닌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세 개의 문서군(文書群)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1951년 3월 조방불하를 이틀 앞 두고 발

4) 中尾美知子(a), 1989, 「1951~52년 朝鮮紡織爭議-現代韓國 勞使關係의 스타트 라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中尾美知子(b), 1991, 「1950년대 한국노동운동의 분기점-조선방직 쟁의연구-」『역사비평』 제1호;任松子, 2004, 「1946~1952년 대한노총의 내부갈등과 그 성격」『한국근현대사연구』 제28집 등을 참조. 해방직후 귀속재산이었던 조방의 운영, 대한노총 내부의 주류파와 비주류파의 알력, 이승만정권의 조방에 대한 장악 등 조방쟁의를 둘러싼 당시의 여러 가지 세력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재차 언급하지 않겠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생한 조방낙면(朝紡落綿)사건으로 김지태(金智泰) 경영진이 물러난 뒤 이승만의 후광을 업고 강일매 사장이 취임한 이후 노동자에 대한 탄압에 노골화 하면서 1951년 10월부터 시작된 조방쟁의에 관한 문서(I), 둘째 1958년 10월 발생한 조방쟁의 관련 문서(II), 셋째 1960년 4·19 직후 이전에 조방관련 쟁의에서 해임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원상 복귀와 조방의 정상운영을 요구한 관련 문서(III) 등이다. 각 문서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1) 대한노총조방특별지부에서 발간한 『朝紡爭議眞相』 문건이다. 이 문건은 편지지 용지 16장 분량에 작은 글씨를 철필로 등사한 문건이다. 문건의 발행 주체인 대한노총조방특별지부는 1947년 11월 결성된 조직으로 해방 직후 좌익의 전평계열 노조의 활동을 타도 목표로 해서 조방 내에 결성된 반공 노조이다. 조방특별지부는 귀속재산인 조방을 노사공동으로 불하받으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였다.⁵⁾ 따라서 이승만의 후광을 업고 조방에 취임하게 되는 강일매 사장 이전 관리인이었던 정호종(鄭浩宗) 체제에서 노사의 밀월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중심된 역할을 한 조직이다. 그러나 강일매의 조방 사장 취임 이후 어용노조를 통해 노동자들을 탄압하자 反강일매투쟁을 전개하는데 앞장선 조직이다. 문서의 내용 역시 1951년 9월 5일 강일매의 취임 이후 노조위원장매수, 조방특별지부 계열의 위원장 박승태와 부위원장 이상옥 해고, 反강일매투쟁의 시작과정, 강일매측의 조방쟁의 반대에 앞장선 조광섭(趙光燮), 주종필(朱鍾馳), 조룡기(趙龍基)의

5) 中尾美知子(a), 1989, 「앞의 논문」, 23~24쪽.

악행,⁶⁾ 조방쟁의에 대한 국회의 조방쟁의진상조사 및 강일매 퇴진결정, 이승만의 노동계 통일을 위한 통일전국대회준비위원회의 모임을 경무대에서 갖게 된 배경 등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방쟁의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통일전국대회의 결정사항이 중요한 만큼 모든 역량을 이 대회에 결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문건은 끝을 맺고 있다. 따라서 1951년 10월 발생하여 12월 25일부터 전면전으로 확대된 조방쟁의의 전후사정을 알 수 있게 하는 문건이다.⁷⁾ 특히 대한노총의 해제모니를 두고 전개된 노동계내의 분열과 대립이 조방쟁의에 투영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사료적 중요성을 갖는다. 전문은 기존의 노동운동 관련 책자에 수록되어 있다.⁸⁾ 그 만큼 이 문건이 갖는 사료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기존의 책자에 수록된 『朝紡爭議眞相』은 발행 주최가 대한노총조방특별지부가 아니라 대한노총특별지부 쟁의대책위원회로 되어 있다. ‘쟁의대책위원회’의 명칭이 덧붙여 있는 것은 대한노총에서 책자를 발간할 때 추가 기술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건의 발행 시기는 전후의 내용으로 보아 대한노총 제6차 전국대회의 개최시기였던 1952년 5월 30일 이전으로 여겨진다.

2) 1952년 3월 17일 현재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위원회(朝紡爭議被奪主權委員會)’ 명의로 작성된 『罷業從業員名單』이 있다. 이 명단에는 남자 76명, 여자 38명 전체 114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명단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장재봉(張在鳳)과 이상옥(李相玉)이다. 장재봉은 1949년 11월부터 1951년 7월까지

6) 각 인물들에 대해서는 任松子, 2004, 「앞의 논문」, 128~131참조.

7) 1951년 12월~1952년 3월까지 일자별 조방쟁의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한국노동조합운동사』, 360~366쪽.

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앞의 책』, 381~387쪽.

조방에서 근무하였는데 조방 중역진과 회사를 공동불하 받으려고 준비 중이다 조방낙면사건으로 체포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 반을 판결 받았다.⁹⁾ 이상옥은 1918년 출생으로 북경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1935~1939년 경상남도 산청군과 남해군 지방교화주사를 비롯해 총독부 사정국(司政局)에서 근무하다가 해방 후 부산에 와서 1946년 조방 경비과에 취직하였다. 1951년 5월 26일 집권세력이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출근길 국회의원들을 경남도청 정문에서 체포한 5·26사건, 흔히 부산정치파동의 와중에 민국당과 재야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그해 6월 부산 광복동 국제국락부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반독재호헌구국선언문’사건, 일명 국제구락부사건으로 각각 구속되기도 했다.¹⁰⁾ 이때 구속된 인물 중에는 대한노총의 선봉대로서 해방 직후 좌익계의 전평(全評) 영향력이 강했던 부산에 대한노총의 산하기관으로서 대한노총부산지구연맹을 결성해 전평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대한노총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앞장섰던 송원도(宋元道)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구락부사건으로 검거된 이상옥은 1951년 9월 이승만의 후광을 업고 조방에 취임한 강일매(姜一邁) 사장의 어용노조 운영에 맞서 1951년 12월 7일 신임노조의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이었던 박승태(朴昇台)와¹¹⁾ 함께 조방쟁의를 이끌었다. 이후 1960년 1월 전국해상노조연맹사무국장과 그해 11월 한국노련중앙위원회 전국해상노조연합회 최고위원을 거쳐 1969년 전국해원노조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¹²⁾ 특히 그

9) 『東亞日報』 1951.5.9;8.16;8.30

10) 釜山日報社, 1985, 『臨時首都千日』, 304쪽

11) 참고로 中尾美知子는 자신의 논문(中尾美知子(a), 1989, 「앞의 논문」) 전체에서 박승태(朴昇台)를 박정태(朴鼎臺)로 잘못 표기하였다.

12) 장재봉과 이상옥에 대해서는 中尾美知子(a), 1989, 「앞의 논문」, 65~66쪽 및 『민주신보』 1951.8.30

는 1950년대 후반 대한노총의 중요 세력 중에 하나였던 부산부두노조를 결성하여 부산부두노조는 물론이고 대한노총 내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상당히 발휘한 인물이다.¹³⁾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罷業從業員名單』은 장재봉과 이상옥이 중심이 되어 조방쟁의가 한창 전개될 때 파업참가자들의 단결과 투쟁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신들을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위원회’란 이름 아래 파업참가에 적극적이었던 인물들의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1960년 8월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위원회 위원장 박승태(朴昇台) 명의로 ‘조선방직주식회사 종업원피탈주권환원에 관한 건’으로 작성한 『陳情書』이다. 박승태는 강일매 사장이 조방에 부임한 이후 노조를 어용화 하자 여기에 맞서 1951년 12월 7일 조방노조 정기대회에서 신임노조 위원장으로 선임된 인물이다. 진정서 분량은 편지지 10장 정도인데 제출처 자체가 어디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내용은 조방의 창설, 해방후 자치관리위원회, 귀속공장으로서 관리, 조방불하사건, 조방쟁의, 국회환원결의, 강일매사장의 조방불하와 그의 치부, 마지막으로 진정서를 작성한 주체측이 제기한 강일매 사장의 5가지의 횡포 등을 서술하였다.

『陳情書』는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해방 이후 조방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또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귀속재산인 조방을 정부로부터 공동불하 받아 공동 운영키로 하고 중역진 5할, 노동자 4할, 나머지 1할은 공장운영에 공로가 있는 사원에게 각각 분배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리고 불하를 받는데 필요한 노동자분 입찰보증금 3억 7천만 원을 노동자들이 모았던 점. 조방낙면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게 되었으며 또 사건

13) 김기옥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앞의 책』, 440~449쪽.

이후 새로운 사장으로 부임한 강일매 경영진의 인적구성과 강일매가 조방을 불하받는 과정에서 자행한 각종 악행들, 예를 들어 조방 불하와 동시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위로금 6 억 5천 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 모든 종업원에게 분배해야 할 총 주식의 2할(시가 3억 5천 만원)을 임의로 처분한 것. 10~20년 동안 근무한 옛 종업원들을 파면 추방한 것. 공장보유 견직기 이외 수많은 재료품, 화학약품 등을 임의 불하하고 심지어 5천 노동자들의 유일한 후생시설인 2만여 평의 운동장을 개인 일인에게 50년 기한으로 임대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해방 이후 조방경영과 조방낙면사건, 뒤이어 진행된 강일매 경영진의 비합리적 기업경영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II

1) 1958년 12월 조방부당해고자일동 대표 권종근(權鐘根)이 대한노총 총본부 위원장 앞으로 편지지 8장 분량으로 보낸 「不當解雇者復職狀況件」이다. 서술 자체가 굉장히 난필(亂筆)로 되어 있어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이 문서는 1958년 10월 15일 발생한 조방쟁의 상황을 일자별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이때의 조방쟁의는 조방 혼자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원래 10월 7일 대한노총 전국섬유 연맹 제7차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임금 인상 30%를 관철하기 위해 일어난 쟁의임을 확인시켜 준다. 조방쟁의는 10월 12일 준비단계를 거쳐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조방의 어용노조는 노조위원장 이상은(李相殷)을 필두로 파업참가자에 대해 시발서를 강제로 제출케 했는데 그 결과 10월 19일 30명의 무기휴직자들이 최

초로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당시 언론은 조방쟁의에 대해 노동자들이 1958년 10월부터 임금인상 50%를 내걸고 시위한 결과 그해 12월 노사 양측이 임금 30% 인상과 해고 노동자 18명의 우선 복직으로 타결되었음을 확인시켜 준다.¹⁴⁾ 이 문건의 내용이 측약본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 1959년 1월 조방부당해고자 일동 대표 권종근(權鐘根) 명의로 편지지 용지 4장 분량으로 작성된 「保健社會部 長官앞」 문건이다. 이외 「勤勞基準法 違反關係」의 문건이 있다. 이 문건은 편지지 9장 분량 자필로 1958년 10월 조방쟁의를 상황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서술 분량은 편지지 3장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내용은 앞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결국 위의 세 문건은 1958년 10월 발생한 조방쟁의의 발생배경과 쟁의 초기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다.

2) 1958년 조방쟁의 지도부는 쟁의 시작과 함께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서울의 대한노총 지도부에 한 인물을 파견하여 애초 조방불하와 관련된 문제와 함께 향후 조방쟁의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대한노총 지도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經過報告」 문건이다. 이 문건은 누가 작성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글씨체와 전후사정을 감안할 때 1951년 연말 조방쟁의의 중심에 있었던 전 노조위원장 박승태 혹은 전 부위원장 이상옥 둘 중 한 사람이 아닌가 싶다. 「經過報告」는 1958년 쟁의 지도부에서 서울에 파견한 인물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논

14) 『東亞日報』 1958.12.11.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앞의 책』 461쪽에서는 11월 3일 조방쟁의가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어 종결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본고에서 언급한 일련의 문서자료를 볼 때 이는 잘못 기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의들을 하였는지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경과보고」 문건은 서울에 파견되었던 인물이 부산에 돌아와서 조방쟁의를 주도하는 핵심 인물들에게 서울의 출장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으로 생각된다. 서울에 파견된 인물은 16일 첫째 날 국회재정경제위 소속 국회의원 이종남(李種南)을¹⁵⁾ 만나 조방 불하 당시의 비리와 관련하여 국정감사에 대해 주문하였다. 그러나 이종남(李種南)은 국정감사는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당장 국감을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서울에 파견된 인물 또한 조방불하 당시의 비리문제는 불하를 받은 당사자와 사이에 성립되는 것이지 정부로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 결과 조방불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았다. 19일에는 철도노조위원장이면서 대한노총 부위원장인 강태권(姜泰範)을 만나 임금인상 30%의 관철과 해고노동자 복직을 꼭 관철시킬 방안 등에 대해 상호 논의하였다. 그 뒷날 20일 역시 대한노총 부위원장 성주갑(成周甲)을 만나 조방쟁의의 성공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문건으로 「金舜泰良와의 이대류, 太陽堂茶房에서」 문건이 있다. 이는 이상옥이 1958년 11월 19일 태양당 다방에서 이전에 강일매에 매수되어 1952년 조방쟁의 당시 어용노조를 맡았던 김순태양을 인터뷰한 내용을 편지지 7장 분량으로 서술한 것인데 그 내용 중에는 김순태를 중심으로 강일매가 어용노조를 결성할 때, 조건부로 장차 조방이 불하를 받으면 일정금액을 노동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15) 이종남은 1919년 생으로 광주고보를 나와 일본 대관경영대학을 졸업하였다. 해방 후 외무부 서기관 행정신문 논설위원, 경상남도의회 의원을 거쳐 대한노총 중앙본부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4대, 5대 국회 때는 민주당으로 8대 때는 신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지역구는 모두 부산진갑이었다.(『사진으로 본 국회20년』 및 『역대국회의원총람』 참조)

그것을 위반하고 김순태를 해고한 사실이 서술되어 있다. 김순태의 진술을 통해서 애초 강일매가 사장 취임 이후 어용노조를 결성할 때 어용노조원들에게 장차 조방이 불하를 받을 때 우선적으로 어용노조원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것처럼 약속하고 어용노조원들을 모았음을 엿 볼 수 있다. 결국 1958년 10월의 조방쟁의는 임금인상을 위한 일상적 파업의 수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파업지도부 및 관련자들의 치밀한 준비 끝에 진행된 쟁의였음을 위의 세 문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 1959년 1월 편지지 4장 분량으로 대한노총 경상남도노동조합연합회 위원장 성주갑(成周甲)이 국제신문사 앞으로 조방과 조방의 어용노조가 저지르고 있는 비민주적 처사에 대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과 같은 분량으로 성주갑이 조방 노조위원장 앞으로 보낸 「노동조합에 관한 질의서」가 있다. 이 문건에서 노조는 조방불하 당시 정부로부터 받은 광목 9만 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만약 파악하고 있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1958년 10월 발생한 분규사태 때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사용주측의 입장에 서서 노동자를 고통에 빠트린데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서신이다. 질의서와 서신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 성주갑은 동년 1월 편지지 10쪽 분량으로 경상남도지사에게도 「노동조합법 및 노동기준법위반 사실에 대한 보고의 건」 또한 제출하였다. 내용은 조방 사용주의 악덕 행포를 고발하고 특히 어용노조의 조합원 탄압과 노동자의 인권유린에 따른 조방 노동자들의 억울한 실정을 보고하는 것으로 ① 조방 불하 당시 정부로부터 받은 광목 9만 필을 사용주가 횡령한 사실 ②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의 산전 산후 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 ③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근,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시말서를 적게 하여 노동자 3백 명을 해고한 일 ④ 해고 당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 ⑤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사용주 일방의 취업규칙과 사용주 앞잡이를 통해 노동자를 감시 감독하는 일, 이에 여공들은 수면을 내쫓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근무하는 현실 ⑤ 설이 가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체불 임금 2개월분을 지불하지 않는 사실 등을 고발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그런데 고발성을 갖는 이 문건은 각 내용을 서술한 상단에 항목별 순서를 아라비아숫자로 새롭게 매겨 놓고 또 본문의 내용을 여러 군데 수정한 것으로 보아 이 문건 자체가 곧바로 경남도지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남도지사에게 발송할 완성본 문건의 초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건의 축약본이 편지지 6장 분량으로 작성된 것이 있다. 전체적 내용은 동일하지만 전자와 다른 점은 문서 말미에 해고자 15명의 명단이 기재된 점이다.

4) 1959년 1월 편지지 9쪽 분량으로 대한노총 부위원장 강태범(姜泰範) 앞으로 보낸 『姜泰範副委員長 貴下 歎願文』이다. 탄원서의 표지 1쪽은 청색 펜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1쪽의 뒷면 곧 2쪽은 성명이 없는 상태로 15명의 목도장이 찍힌 채 검정색 펜으로 ‘조선방직공업주식회사 부당해고자일동 대표 권석근(權鍾根)’이 보건사회부 장관 귀하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본문의 3쪽부터는 또 강태범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1~2쪽과 본문(3~9쪽)의 서체와 편지지 모양이 다른 것을 감안할 때 먼저 본문을 서술하고 그 뒤 서술자가 표지 맨 앞쪽 1쪽을 작성한 뒤 그 뒷면, 곧 2쪽에 권종근이 후술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탄원서의 본문 자체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확인 자체는 어렵다. 그러나 서체를 볼 때 당시 경상남도 노동조합연합회 위원장 성주갑(成周甲)이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다. 본문의 내용은 노동자들이 시말서를 강요받고 500여 명이 억울하게 해고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이 경영진과 결탁하여 오히려 노동자를 더 고통과 불안공포에 허덕이게 한 점, 기업주의 임금 인상 30%의 약속 위반, 구정을 앞둔 시점에 두 달분의 임금마저 지불하지 않는 회사의 부당행위 등에 대해 꾀를 토하는 심정으로 해고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들로 되어 있다. 탄원서의 내용대로라면 쟁의 당시 노사가 합의를 본 임금인상 30%는 실제 지켜지지 않았다. 이 점은 1959년 2월 대한노총 경상남도노동조합연합회 위원장 성주갑(成周甲)이 편지지 9장 분량 자필로서 조방 앞으로 보낸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위반 사실에 관한 시정 요청건」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성주갑의 시정요청건의 내용은 ① 조방불하 당시 종업원 퇴직금 및 해고사실 그리고 불하당시 정부에서 지불한 바 있는 광목 9만 필에 대한 사용 내력 ② 근로자의 약리(弱利) 행위를 구실로 근로자 1인당 평균 7천원에 가까운 금액을 강제로 차감하여 그 금액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수차에 걸쳐 그 출자금을 환원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는 이유 ③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 ④ 30%임금 인상을 (1958년-옮긴이) 12월 노사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는 않는 이유 ⑤ 터무니 없는 시말서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하여 3,4백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이유 및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징계하는 것에 대한 해명 ⑥ 이상의 사유에 대해 2월 6일까지 조방에서 해명하지 않으면 대한노총 중앙본부와 긴밀한 연락 아래 부당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통고하는 것들이었다.

5) 이 밖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958년 10월 조방쟁의와 관련하여 자유당 중앙의장이면서 국회의장이었던 이기봉(李起鵬)을 상대로 작성한 「진정서」가 있다. 내용은 강일매와 그의 처남이면서 강일매 사후 조방의 사주로서 활동한 사장 정태동(鄭泰東)의 비리를 아주 온건한 목소리로 비판한 진정서이다. 분량은 편지지 13장으로 되어 있지만 글자가 크고 한 줄씩 띠어쓰기를 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서술 분량은 편지지 5~6장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외 편지지 4장 분량의 「不當解雇者 및 無期休職處分當한 者 名單」에는 92명의 휴직 및 해고를 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편지지 4장 분량의 「朝紡勞動組合代議員名單」이 있다. 전체 108명의 대의원 이름을 적어 놓았는데 그 중에 44명은 현장부서와 이름을 같이 기재하였으나 나머지는 이름만 기술되어 있다. 대의원 명단에는 1951년 10월부터 시작된 조방쟁의 당시 조방노조 감찰부위원장이었던 전병택(全秉澤), 노조부위원장 이상옥(李相玉)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1958년 조방쟁의 역시 이전의 1951년~1952년 조방쟁의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6) 비슷한 시기 작성된 편지지 13장 분량의 「朝紡問題 聲明書」문건은 내용을 기술한 뒤 밀줄로서 수정한 것으로 보아 성명서를 내기 위한 기초 초안문으로 생각된다. 내용은 폭압적인 강일매사장 아래 고통 받고 신음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대우에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폭군 강일매 조방으로부터 물러나라”는 프랜카드를 굴뚝에 달고 투쟁한 일, 조방을 정부로부터 불하 받을 때 노동자들이 노사공동불하를 염두하고 마련했던 입

찰보증금을 노동자의 허가도 없이 조방불하 충당금으로 사용한 사실, 강일매 처남인 정태동(鄭泰東)사장의 횡포, 1957년 3월 노동자를 강제 퇴직시킨 일, 1958년 월차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들을 기술하였다. 문서의 작성 시기는 1958년 무렵으로 판단된다. 같은 내용의 초고본 성격을 갖는 「조방기업주 정태동에게 보내는 공개장」이란 편지지 11장 분량의 문건이 다른 문건 속에 묶여져 있다. 이외 「朝紡勞動者에게 檄한다」 격문은 전체 “근로기준법 제47조와 제48조에 의거한 1956년도 및 1957년도의 연차금, 월차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하자!!” “폭군적 군림으로서 우리 조방노동자를 인간 이하의 학대로서 대하는 정태동을 규탄하자!!” “굴욕적인 복종을 거부한다고 직장을 이동케 하고 시말서, 각서 및 사표를 강제 제출케 하는 독선(獨善) 정태동을 규탄하자!!” “어용노동조합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탄압으로서 부당한 간섭을 하는 악덕 정태동을 규탄하자!!” 등과 같은 16개의 문구로 되어 있는 격문이다. 1958년 조방쟁의 당시 작성된 문건이다.

III

1) 1960년 4·19혁명 직후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宣傳文 其二(2)」가 있다. 분량은 편지지 6장 정도인데 내용은 강일매의 조방불하 당시 노동자들이 마련했던 입찰보증금이 충당된 사실, 강일매 사후 삼호재단(三護財團) 악덕기업주 정재호(鄭載護)에게 조방이 양도된 일 등을 기술하면서 이승만 독재정권 아래 악덕기업주에게 뺏긴 조방을 다시 원상대로 회복 시켜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글을 맺고 있다. 전후 내용을 보아 앞서 언급한 1960년 8월 발행한 『陳情書』 보다 시기가 앞

서 작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 4·19혁명 직후 박승태, 이상옥 등이 중심이 되어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위원회를 구성하여 1960년 8월 7일 위원회 결성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사용된 문건으로 판단되는 B4용지 2장의 철필 등사지로 작성된 문건이 있다. 내용은 선언, 강령, 회칙 순으로 되어 있고 회칙은 총칙, 구성, 권리와 의무, 기관 및 회의, 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의 임기는 조방을 원상회복하고 해산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위원회는 조방을 정상적으로 접수한 뒤에 해산할 잠정적 조직체였음을 보여준다. 문서의 끝에는 실무위원회 8명과 심사위원회 8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1951년 연말부터 시작된 조방쟁의 당시 노조의 중심인물이었던 박승태, 이상옥, 장재봉 등이 눈에 띈다. 편의상 이 문건을 「結成大會文件」으로 명명했다.

2) 「結成大會文件」과 짹을 같이 하는 것이 박승태 작성의 「呼訴文」이다. 박승태는 8월 7일 조방원상회복을 위한 모임을 개최한 뒤 여기에 참가한 동지일동에게 조방쟁취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지 1장 크기의 「呼訴文」을 작성했다. 「呼訴文」은 철필로 등사된 것인데 위원장 박승태의 도장이 등사지 위에 붉은 인주로 찍혀 있다. 그리고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위원회 위원장 박승태 명의로 1960년 9월 철필 등사지로 작성된 B4 크기 3장의 또 다른 『呼訴文』이 있다. 내용은 조방쟁의 이후 8년 동안 신음했던 조방노동자들이 4·19이후 민주시대를 맞이하여 조방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1960년 8월~9월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습자지 2장에 쓰인 「聲明書」이다. 내용은 그 동안 피해 받은 노동자들의 원상복직을 5개 항목으로 2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다. 각 항목은 해고노동

자의 원상복직, 퇴직금과 해고수당 지불, 해고노동자에 대해 회사측과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위원회가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회사에 입사하도록 할 것, 미지불퇴직금에 대해서는 완불할 것, 1955년 조방불하 될 때까지 정부관리 기간 중의 퇴직위로금조로 불하대금에서 공제된 10억 3천만 원을 정부에서 조사하여 당시의 전종업원에게 지불할 것 등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방쟁의 관련 문서들은 귀속기업체로서 관리되던 조방의 불하를 둘러싸고 시작된 1951년 10월의 조방쟁의, 이후 강일매 경영진의 폭압적인 노동자 탄압에 맞선 1958년의 조방쟁의, 4·19 직후 해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복직운동과 조방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내용들은 1950년대 조방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물론이고 1950년대 이승만의 장기집권 기도 속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이 낳은 기업체 운영의 문제, 그리고 이와중에 정치권과 연계된 대한노총 내부의 주도권 다툼 등이 얹혀 있었음을 한 눈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료들이다. 지면관계상 첨부한 원문은 『朝紡爭議眞相』에 한정했다.

朝紡爭議真相

大韓勞總聯合特別支部

朝 紗 紗 争 議 真 相

一、朝紗爭議發端의原因及動機

1. 姜一遵社長의挑發

去年之四月五日朝紗社長이로就任한姜一遵氏는就任後不過一個即이 며칠만过去東亞百貨店管理人時代의 우리勞動者를彈压驅使한前科의惡癖을살아나기始作하였으며 그所謂企業主의立場에서雇傭하고있느勞動者를封建時代의暴君과같은蠻行을敢行한夷謾的仁事實이있어습으로이르는姜氏의挑發의仁行動은紗紗勞動者로부여한것과마찬가지로에爭議에시작하게된다. 마련하였다.

(가) 社長의計劃

朝紗社長姜一遵氏는朝紗에社長의로就任하자그는自己的의親近者,又過去東亞百貨店時代雇傭하고있느走狗一味의臺諺。簽名을朝紗의中國幹部로入社시키기爲하여一策을講定하였다. 경기 이方法은過去東亞百貨店에서採次하였던無條件解雇이다. 東Asia百貨店時代에는大韓勞總東Asia百貨店勞動組合의上部組織인 서울市聯盟의強力한爭議로한미안악遣還가西韓之格이었기때문에姜一遵氏도首領에빠지고있을데, 大二四事件이發端되어爭議가中斷되었음으로其終末을보지못하였던것이다.

姜一遵氏가 이전에 경력을 활용하여 朝勤社長으로 활동하자 入社後一個月이 되면서大幅의 인事複動을實施하여 過去數十年間 朝勤과 死生晝夜를 같이하던의 技術者 및熟達된事務員을無條件으로 解雇·降等·驅逐을 시하고 110名의 新入社幹部(社員級以上이即 朝勤에서는社員級이라면 中等學校卒業者가 五年以上連續勤務者, 小學卒業의 十年内至十五年以上連續勤務者가 獲得할수 있는職位)가 離職되면서 離職하는 單位는 單位의 이전 單位에 없는人事複動이 不免이었고 人事에 懸念이 深厚하였다. 姜一遵氏는 이好機會를 그대로 놓지 않았다. 社長의 職場을 다니면서 그를 訓練하는 곳에 總裁로 密怨하지 않느라 請請장(請請場) =百名이 놀고 놀고 찾을 수 있는 所이 作田보다 그를 訓練하는 職位보다 頗其上이었다. 「亞士」(亞算體)에 110名新入社로 因此이 聰明眼亮의 整理를 要求하는 大惑의 腐心가 되었으나 그는 無難이 110名의 職場을 能수하는 能手이므로 其當時의 職務은 調算부(一隻金鑑)以下の 約十餘名이 職場을 能수하는가 데에는 이르지. 聞君東里而歸는 職務人時이니 職務組合이 既設立한 바였기 때문에不失敗하였지만 이今我에서는 職務組合가 自己獨占特有인 如何其壓迫과 酷使 또는 無條件解雇를 시켜도個人資格으로 由以the 職務組合 해임을 이리 험하고 있을것이하니 由以the 職務組合에 가진 姜一遵氏는 次에게人事配置를 處理하는데 整理人員이 該當되고 褒獎貢(褒獎貢)에對外이 職務組合에 加진

하여 評表를 需要하고 或은 審議로서 人權을 践하고到底히 견디지 못하게 하여 感染하여
느것이 殘忍한 그의 虐劃이었던 것입니다

(4) 朝鮮의 興論

前述한바와같이 社長 美一雄는 事務室에서 就務하다가 社長이 드레울에 着干人事를 능
게 하므로 解雇시켰고 社長室에 있던 고문의 秘書를 거느리고 護衛警官과 秘書가奉銳을 차고
從業員을 社長室에 動行하느라 等 친으로 離職에는 사람마다不安과 恐怖가 充滿하여 朝鮮生
產工場 社長秘書가奉銳이 주는必要가 있을가? 從業員이 感覺되느라 일의 社長이 뽐낸다고
저렇게 하느가 이렇게不安하고 不安으로 解雇식하고 理由없이 社長室에 떨어나서 외 이자식
과는 일성끼리야 評表를 내고 빨리나간 이자식 評價를 한 子息 마지막고려 같은 子息하고
罪人取扱以上 刑事事件에 取調 받으니이다. 그렇게 하므로 所謂勞動者の福祿를 驚하여 斗
季한다. 労動組合이 非行 않인 謀略으로 從業員을 中傷이나 하였지 아직 社長의 게 執議나
勞動問題을 가지고 勞動者를 売護하는立場에서 勞動者를 代辦하는것을 보지못한 無能한
者들이다 그것을 社長에게 끔찍을 몰하고 社長의命令에 無條件服從이 있을뿐이다
不法으로 解雇를 당하기도 社長이 人事權이 있으니 人事權의 侵害를 몰랐다고 労動組合에서는
그러한 不平을 하느라 罷免으로 해 處斷한다고 告示板에 大書特筆로서 서서 봇이고 있었다

이것은 社長과 勞動組合幹部와 相連하여 實施되고 있는 講話이다. 그날마다 今午十時에 定期全體大會에서 勞動組合를 다룬 드렸었는데 韓國의 勞動者가 雖持할 수 없다는 勞動組合 을 非議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朝鮮의 政治論의 社長을 相對하여 勞動者를 대체로 社長의 原因不明의 講話과 各種의 無條件解雇는 防止할 수 있는 強力한 勞動組合의 構成이 있어야 하겠다는 勞動者希望가 그當時의 論議를支配하고 있었다.

(4) 勞動運動의 不滿干戈

人氣故에 勞動組合幹部를 定期大會에서 改備하려 하는 것은 民主主義勞動組合에서 있을수 있는 發展의 要素이다. 그로나 善一通氏는 突然 the 勞動組合運動에 全面的干涉이 되어 韓國의 大狗不理 御用勞組은 權威하니 血刃의 行動을 도운 勞組의 殘留를 끼치고 勞組委員會의 朴食補者와 그를 權威하니 勞動者를 社長室에 끌어내어 勞動運動을 抑壓하지 않으면 能免か겠더니 背道을 하여 家族이 불상하고 家族들을 生當하려니 楊淮하니 等의 暴言을 쓰고 善氏는 自己側의 運動의 慢者와 直接 社長이 勞動組合幹部運動을 하니 相對方의 運動을 阻止하기 雖有여 二場內의出入을 禁하고 十二月七日 前期定期全體大會를 앞두고 十二月六日 大會前日에 代議員의 中心人物인 二名의 代議員에 出張命令를 發하였다. 大會參席을 不能케하고 大會當日에는 臨時議長이 由 選出되며 同志一名을 大會에 參加못하게

하기 爲하여 警察에 誓告하여 刑事로 拘捕而 審問을 받게 하여 執行하게 한 事例도 있었다.

(라) 姜一遵反側의 敗北과 其後の 行動

언제나 不法의 인 權威이 있을 때는 「民主國家勞動者」 노동자 及其子이 生기할 것이다. 그렇기 譚正과 謀略파 権力으로 勞動者를 威脅하였지만 11월 7일 大會에서는 姜一遵反側所謂 御用組合의 資本家 政治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姜一遵의 訓訓이 水泡로 도마자자 一層 더 發展의 으로 譚壓하기始係는 一便. 善選組委員長의 社長室에서 殺人한 労動運動이 웃자고 離주나 勞動運動必需要 없어 빨리 訓表를 내고 나가. 1. 차단 勞組幹部를 차례로 불어 所謂委員長은 勞動者의 代表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식 犯人이나 起因 譚壓자甚至於政治가지 불려고 離去되는 故이다.

(마) 新勞組의 受傷策과 國病解決을 爲한 努力

新任勞組委員長 차昇台氏는 社長의 이전한 意途가決코 工場內一部 善選派의 謀略에 基因한 故이로規定하고戰時下勞資爭議는 國國民民眞心에 尊重하여 双方에 있을 수 있는 것의 理由에 事態를 田滿裡에 解決하기 為해야. 이리 勞組는 社長을 三社 生產에 단 金子을 顧慮하되 意途이오니 社長께서 어려운 諒解가 있다면 虛心釋懷하게 諸君 國家生產을 照拂하니 以此 諒解의 意志으로 逐로 本社를 田滿裡에 逐로 本社의 三社重要幹部들에게 그에게 傳言

원자로 한事業도 있었던것이나 社長이終身一貫 勞組解體 斷頭을 講定하였다. 勞組解體에對한 騰压은 慎況과並行하여 높고尤甚하였다 것이다.

(바) 姜氏爭議를 處한 最後の桃戰

姜一遵氏와 政北한 그夫狗一昧는 最後の桃戰으로 其當時統一勞農黨結成準備委員會大會에서 看板을 건 労組에 對抗하기 爲하니 加入書를 面布하고 單一新黨을 反對하는者는 大會領 을 得한者는 單一新黨을 誓傳하고 一便姜一遵氏는 労組의 解體企圖를 識覺化시키고 12月13日에 労組幹部 1名을 無條件解雇의 前先事이 있었던 것이다. 이既시되자 事態를 平和裡에 解決할려는 労組自體의 球解를 考慮하는가지 上部勞組에 이事果을 告訴하고 不得已爭議에 陷入하게 되는 決心을 立제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 勞組委員長의 遷就

이事果을 得한 場合에 伸展한結果 其當時 地區委員長 余氏는 中央委員長 錢鎮濬氏에게 이 轉遷을 告告하였다. 錢委員長이 事態를 讀解하고 解決책을 提出하여 11月10일於 姜一遵氏를 訪向한당 楊謂를 要請하고 勞動者에게 嘘言을 삼가하라는 要請을 하는剎那에 이자서 되 지 못한구 息業勞幼害하려었느니 才고 錢委員長에게 暴行을 加하는 一便 그는 拳銃으로서威脅하고 錢氏를約三十여동안 監禁한 事実도 있었다.

二、朝鮮勞議의 發場

姜一鶴氏는 権力과 金力으로 우리勞動者를 奴隸視하고 所謂勞團의 最高指導者가 勞資向隅로 서 面談하는 席上에서 不送으로 暴行을 加하고 尋談과 脅迫의로서 斷하는데 朝鮮勞組은 안양이라 全國大韓勞組傘下勞動者를 人向으로서 取扱하지 않는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그 많다면 우리는 姜氏도 大韓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그 懲行을 續正식 설機會를 줄것과 또 한 소業主로서 勞動者에 尊重한 待遇가 人向으로서 尊嚴性를 가지지 못하게 하니 所謂尋談·脅迫·恐嚇·暴行으로 斷하는者에 對한 適當社制裁를 加하여 端으로 民主主義國家의 勞動者도 國民의 權利와 義務와 人向으로서 尊嚴性를 가지게 하니 素高社會人權斗争자로부터 勞動者를 不送으로 解雇와 勞動組合運動의 不當干涉을 排除하고 人事複動을 防止하니 被害를 입은 同志들이 經濟的被害를 回復시키기 원한다 朝鮮의 勞動者는 諸般惡條件을 克服하고 각종의 挑戰을 뛰어 넘고 大千勞動者는 韓田結 하여 惡隸無道한 姜一鶴의 挑戰에 奪力으로 斗抗하기를 全體員이 盡其能하였다

(1) 姜一鶴氏勞組機關의 滅脾策을 살펴보자

季議同勞組幹部를 解雇식하는것은 소業主의 常套手段이다 그보다 劍議同勞組幹部를 不送이며 解雇시켜도 法令의 이를 不送으로規定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0일에 姜一鶴氏는 委員長朴景台·國委員長 李相玉兩名을 解雇시키고 勞組幹部를 衣向에 赤色面目를 呈場하였다

通告와 社長室에 不适의로 曰과 時向서의 監察하여 勞組機能의 瘡癩策을 소罔하였으나 賀明社
朝鮮勞動이 1945年 廣德月 因此에 1945年韓國이 되었을때이로 姜氏社 1945年 委員長解雇를後
悔하니 氣色이 있었다

(2) 爭議條件의 明示

朝鮮에 1~3名의 商工監督 1~3人이 承認하는 韓部增加로서 其當時 朝鮮에는 輸出生產量의 五六
兆圓을 後業員配給量으로 韓當되었기 때문에 新人員 1~3名이 人社한다고 生產量이 增加되지
않는 것은 그들의 技術者도 않이고 事務能力者도 않인 百貨店商人 또한 姜氏妻男妹夫同婚의 稽
查者이며 労組委員에는 不必要한 人物이기 때문에 生產의 増加를 보지 못하고 新入者 1~3名에게
도 生產量의 五六兆圓의 韓當量中에서 配給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全從業員의 配給量이減少되
고 있음으로 여기에서 諸君當의 增加 없이 商工監督의 選擇은 1人不正人事 채用의

(가) 機回로서 人權保障

(나) 勞動者의 人權保障
(다) 自由勞動運動의 保障
(마) 善一過內 氣色要求

以上四條件을 爭議向 勞動者의 要求條件으로 하였던 것이다

三、 反動分子의 出現

朝勦爭議의 察言文을 全國組織代表者の 회席하여 회의를 보고然後에 朝上으로 轉表된자 二三日後에 実然히 朝勦爭議反對声明書가 朝上으로 報導되었다. 이것은果然 労總의 指導者라고 自認하고 趙光美·朱鍾馳·曹龍基이 三氏가 姜一鶴氏의 權力과 金力에 面受하고 우리勞動者를 機械에 供する 野慾을 考는식으로 보았다. 이것은 그 反對聲明의 내용은 이것을 爭議로 認定하고 並且에 有個個人의 衝突로 取扱한다는 절이였다. 첫으로 顯然 緊急일이다. 労動者의 계彈도하는 것도 不法解雇하는것도 個人問題일까 그들이姜一鶴에게 責任되었다는 自己의 告白書를 發表한 절이었다.

1. 趙光美氏의 行動

이미勞動者の 利益을 代表하기 爲하여 國會에 보낸 趙光美의 國會에서 朝勦爭議의 上程을 告告하고 그들에 裁明을 反對한 朝領正副委員長에 以及 朝領까지 告訴하였고 姜一鶴氏가 우리勞動者를 不法解雇하는것을 오히려 慎慮하고 있는 反對行動을 하였다. 趙氏는 그로因하여 朱鍾馳委員長으로부터 追放당하고 労總에는 아무關係없는者가 되었다.

2. 鐵道委員長 朱鍾馳氏의 行動

朱氏는 鐵道에서 独斷으로 裁明을發表하여 姜一鶴氏에 懸附하였고 鐵道에 있는 同志들을 朝領에 送遣시켜 朝勦爭議에 소연소리를 擺漾하고 由舊中大國總領이 하족인 朱鍾馳의 朝領爭議의 真

相을故意로曲하고 韓朝의 姜氏天狗 徒輩幾個分子와 학습하여 所謂反教宣傳文을 韓朝에다 봄이다
無條件姜一遵民에 被後悔의 過去 自己의 罪惡을 忽視하지 않고 그야말로 勞動運動의 反逆者이다 그는
이러한 罪過를犯하였기때문에 鐵道全國大會에서 檢調長에 挑選되었으나 姜一遵 氏에 防備本部會
權力과暴力를利用하여 僞稱鐵道勞組를 만들어 가장 惡質의 인 勞動부로一가다

三. 趙龍基氏의 行動

慶北委員長으로서 韓北都團委員長이었으나 去年 自由勞組에 自由團에 參席하지 않았다는 不平이 韓
勞組의 反對團體였으나 直接行動은 없었다. 그는 勞組로서 某某 檢調長으로 부터 檢調本部會에
丞相 朴正熙는 韓朝勞組에 反對하였기 때문에 檢調本部會으로 부터 檢調本部會에
以上와같이 劳組의 反對分子들이 所謂淨化全國大會라는 것을 領導하여 全國 勞動會議에姜一遵 惡質全
業本部會도 同樣으로서 外形上 劳組의 分裂를 備裝하였기 때문에 이로 因하여 韩朝會議가 開시되
勞動者側을 不滿하게 만들었다는것이 大韓民國勞動本部에 그대한 惡質에 如此 것에 難堪한 점
이다

四. 會議의 國會上程

4. 國會議事堂前底不感

一月十三日附 警察의 行政指示命令의 過去 五一勞動者精神을 慶場本部團體本部會에貼行로 藏不感

하고各自가 등에도標語를 블들이고 있었으나 이것도禁令으로不得已行動을 禁止당한同志들이 一月二十一日
國會에呼訴 및 議事堂前園에서 朝鮮社長 姜一遵 請求權要求를 延伸하는一大示威를敢行하였다 其當時
參加人員은 非當者 1500名可量이었다

2. 國會調查團選定

一月二十一日 勞動者이呼訴로 알미암아 國會에서는 罷免運動家가採狀되어 朝鮮爭議真相調查를 하기爲
하여 調查團五名이選定되었다 이 調查團은 『平壤貿易』에서 简意調查를進行하여 모든真相을 把
握하게 되었는것이다

3. 姜一遵社長의罷免決議

一月二十二日 朝鮮爭議真相調查를 完了한 調查團一行은 國會에 그眞相을 正式으로 報告하고 姜一遵氏의罷
免決議의動議案을 提出하여 二十三號零으로 一遵氏의罷免決議가 可決되어 勞動者側의正義가
天下에 明示되었다

4. 同志의拘禁

一月三十一日 突然히 勞組幹部 7명이 拘禁되었고 이어 委員長자 6명의 勞組幹部가 拘禁되었는데 그
理由는 一月二十一日 朝鮮內示威에對한 責任이었다 그리하여 拘留期限滿了와 同時에 罪 있는 判明
으로釋放되었고 其前後로 數名은同志가 檢察에引致당한事實이 있다

五、朝鮮罷業宣言

1. 朝鮮便僨勞組의 發生

國會에서 龍虎決議 까지 朝鮮事議는 解決을 보지 못하고 一 遷氏의 謂田은 日益甚甚하여 있어 本年三月十일에는 突然姜一 遷氏가 朝鮮勞組의組織을 取解시키려는 手段으로 朝鮮에 있는 慢個反動分子及 朱鍾馳一味와 衛頭不良者와 與合하여 釜山市西面火壘劇場에서 所謂朝鮮勞組改備이라하여 都合三十餘名으로 六千後業員을 摧하는 朝鮮勞組를 改備하였는데 召集權者도 沒有 仁善一 遷勞組를 만들기 慮하여 本大會에 參加한 朝鮮代議員은 二三名인데 其中 二名은 除名當選者이다 朝鮮代議員總員 100名中 一名은 參加한 朝鮮社會議會로 自稱하여 結成하고 不法의으로 朝鮮勞組組合을 占據하여 勞組幹部의出入을 遷體와 警察官(調頭)이 制止하는 一便 그들이in 勞組幹部를 改備하여 傷處를 削는 等 朝鮮事態를 그들의 良心에 之關하여 收拾할 수 없는 것을 直覺하水 勞動者의 最后的 武器인 罷業을 欲하였던 것이다

2. 罷業의 狀況

姜一 遷氏의 惡辣無道 한處事에 濟價한 朝鮮同志는 一 遷氏 3月13일을 期하여 罷業을 斷行하였는데 不過三十餘名이 欄制로 鎮壓되었어 就業할 뿐이였기 때문에 朝鮮은 完全罷業으로 陷入하고 말았다

朝鮮罷業이 發生되자 本道馳一昧는 朝鮮의一部 反動分子와 부려 罷業決死反對하는 樂團을 이마에 둘
이고 주려를 타고 罷業한 수그들의 家宅搜索를 하여 수그들을 捕獲하여 工場으로 連行하여 無數의毆打
하였고 警察파協同하여 罷業한男女들의 在所를 搜索하여逮捕당한者は 警察官에 앞서 無數의毆打
하고 傷處를 입은者は 誓出하느 等 같은 同志로서 또한 같은 労動者로서 엊저 금수가 많았고 그
렇게 殘忍하게 残忍하게 할것인가 그들이 이렇게 우리 労動者를 못 살게 한 美一通氏보다도 惡賤한元凶이다
4. 罷業으로 因하여 勞動者の被害狀況

- △ 警察에 拘禁內至取調를 받은者 或은毆打를 당한者 100名以上
- △ 反動分子姜一通氏와 그들의 傷處를 입은者 600名以上
- △ 傷處를 입은者 30名以上

大罷業後의 暫過

1. 罷業後의 罷免者

朝鮮罷業後勞組組員으로서 热誠의 인同志로 指団한者は 모조리 罷免되어 不法解雇가百五十余
이었는데 其後姜一通氏는 自己가 創設한 不法僕稱勞組를 朝鮮에다 遷接하여 우리 善良한同志를
奴隸東被하는데 遷接價格으로 두고 罷免된 労組幹部와人事를 支那人으로 罷免되었으나 우리
勞組의會議에 參席한者도 罷免되었으며 野遊會를 謙이 하기도 罷免을 시하古今의 三百余名에 达한

羅東看를 냄고 있는実情임

2. 朝労에서 李鍾南同志를 道議員選舉에 当選시킨

朝労罷業을 前後하여 労働이 物力와 李鍾南同志를 釜山市에서 逃馬식려 最高得票이 而当选되었다는
데 그 選舉運動에 美一遵을 批判하였다는理由로 畏數의男女工이 解雇를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現在
朝労勞組幹部의 계 罷業들이 美一遵氏와 만나서 斗爭을 集體化시키는策劃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3. 各級勞組의 고마운 搬助

京労、三和、龍工、의 各勞組에서는 우리 朝労團員의 勇敢한 斗爭을 譬揚하고 同志들에 誓意 것
모아주신 約八百萬円可量의 金錢을 搬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士氣는 衝天하였고 生活苦에 소련
이는 罷業當한同志들을 慰勞할 수 있는 生光스런 선物이었다

七 大韓勞總會一大會와 朝労

大韓勞總의 分裂은 外形上 分裂같이 보이고 있어오나 이는 朝労爭議以後 組織을 虐視하고 勞動運動
의 根本理念에 背駁된行爲으로 組織에서 分出당한幾個反動分子가 組織을 떠나서 権力과 金力에 嘘附하던
勞總의 分裂이 있을 것 같이 假裝하고 勞動者의 分裂이란 美目을 팔아 自己들의 野慾을 채우는 事基
因한것은 오로지 大韓勞總이 管을 틀는의 良心的 判断이겠이다. 그리고 朝労에 現在 不法僞稱勞總의
是一廻永가 自己의 係身策으로서 急造한것이며 이것은 大韓勞總朝労勞動組合이란 美目을 假裝한

데不過한것이다

1. 総一收拾과 朝効

이느과 같은世稱勞總分裂의 根本動機가 朝効爭議에 搖蕩이 있었다면 朝効爭議의 解決은 第三
義의이라 할지라도 朝効에서 勞動組合이라고 自稱하는 所謂勞總反對輩 李鍾國氏首導의 一味와 争議로
서 今日의 惡境을 떠고 있는 차별委員長이 應當한 勞動組合를 勞動運動의 根本理念의 絶對的信賴感
를確立시켜 労動運動의 生存을 保障하기 願がゆ (所謂勞動者를 應當한 労動運動을) 杜異合氏의 勞總
를正統으로規定하는 労動運動의 大義名分을 세우지 않으면 総一全國大會의 意義를 保有할수 있을까
甚이 畏向으로 生覺하지 能을 수 없느것이다

2. 矛盾と現実

總一全國大會準備委員會에서는 大統領閣下의 韓議로서 各分裂된 勞組의 全國大會代表員選拔推舉規
則을 議定하고 會議가 社會部長官廳에서 京畿台帳秘書官立會下에開催되였느라 朝効의 代表員を選
拔權이 있는 李鍾國의 재選拔権을 갖다는 提案이 있었는데 勞總의 理念을 忽視하고 參席者全部가 아
무答辨이 없었던고 하니 참으로 大韓勞總의 未來를 慮하여 寒心之事이며 이에對하니 一言半句도
正當한主張이 없었다는 그들이 大韓勞總의 勞動者를 應當한 行動보다 權力과 金力과 地位가 앞서는處
를 亂事로 故行하는 義理없고 正義를 둘으는 機會主義的存在가 많일가 畏心한다

八、第一全國大會와 朝鮮의 가는 길

数百名의 犢牲을 선 朝鮮會議는 朝鮮勞動者가 正義에 헌신하여 斗爭하였고 그가족이 암말노 우리獨立路線을 建立하는 民族田舎의 勇氣의 인斗爭으로 大韓勞動史上에 燦然한 一页를 남길 것이다
이러한 矛盾的斗争의 錄想가 가장 遷進하여야 할것이며 이것을 褒賞하는 審判台야 할로 第一全國大會의 會場뿐이라느 것을 굳게 믿는바이다.

歷史를 創造하느 者、義를 세우느 者、으로서 権力과 金力에 눈이 어두워 것에는 않될것이며 다만 大韓의 勞動者를 繼한 어 勞動運動의 指導者로서의 全國代議員 여러분의 正確한 判斷이 朝鮮勞動者 死石를決定하는것을 믿어 앉아 앉아야 않으며 全國代表者が 決議下에 採状된 이 朝鮮會議를 여러분의 決議로서 친切히 밀어 줄것을 喝할하여 앉아 앉는다